



캘리포니아 대기환경위원회 드라이클리닝 고지 2009-1



2009 년 10 월

퍼클로로에틸렌(퍼크) 드라이클리닝 시설 소유주 및 운영자에게 드리는 안내문

이 안내문의 목적은 퍼클로로에틸렌(퍼크) 드라이클리닝 시설의 소유주와 운영자들에게 2007 년 12 월에 법제화한 '드라이클리닝 작업에서 발생하는 퍼크 배출가스에 대한 대기 부유 유독물질 통제 조치'(Airborne Toxic Control Measure for Emissions of Perchloroethylene from Dry Cleaning Operations - 일명 '드라이클리닝 ATCM')에 의한 준수 요건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.

드라이클리닝 ATCM 은 모든 퍼크 드라이클리닝 시설에 적용되는 주 차원의 법규입니다. 드라이클리닝 ATCM 은 지역 대기국이 시행하고 집행합니다. 그러나 대기국은 주 차원의 드라이클리닝 ATCM 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엄격한 자체 규정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. 규칙 제정 관련 정보는 거주지 대기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지역 대기국 연락처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: <http://www.arb.ca.gov/capcoa/roster.htm>.

드라이클리닝 ATCM 준수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?

법규화된 첫 번째 주요 준수일로 드라이클리닝 ATCM 에 따르면, 주거 공존 시설에 있는 기존의 모든 퍼크 드라이클리닝 기계와 15 년 이상 된 모든 퍼크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**2010 년 7 월 1 일**까지 현업에서 폐기하여야 합니다.

다음은 승인된 드라이클리닝 ATCM 의 주요 요건입니다.

- **2008 년 1 월 1 일**을 기하여 새로운 퍼크 드라이클리닝 기계의 판매 또는 리스를 금지합니다.
- 주거공존 시설(주거와 벽을 공유하거나 주거와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한 시설)에 있는 기존 퍼크 기계는 **2010 년 7 월 1 일** 이후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개조한 퍼크 기계 및 15 년 이상 된 퍼크 기계는 **2010 년 7 월 1 일**까지 현업에서 전부 폐기하여야 합니다.
- 사용 연한을 알 수 없는 기계는 **2010 년 7 월 1 일**까지 현업에서 반드시 폐기하여야 합니다.
- 기타 모든 퍼크 기계는 사용 연한이 **15 년**이 되는 시점 또는 **2023 년 1 월 1 일** 중 더 빨리 이르는 시점까지 현업에서 폐기하여야 합니다.
- 우량 작업 관행, 기록 유지, 보고 등 퍼크 드라이클리닝 업소의 준수 요건이 확대됩니다. 그리고
- 퍼크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는 캘리포니아주 드라이클리닝 업소를 대상으로 퍼크를 매매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보고하고 유지하여야 합니다.

해당 법규의 요건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: <http://www.arb.ca.gov/toxics/dryclean/dryclean.htm>.

드라이클리닝 대체 기계를 구매하는 업소를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가¹?

퍼크 기계를 드라이클리닝 대체 기술로 바꾸는 업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주 차원의 '무독성 드라이클리닝 장려 프로그램'(Non-Toxic Dry Cleaning Incentive Program)(입법안 998)은 기존의 퍼크 드라이클리닝 시스템을 습식 세탁과 이산화탄소 세탁 기술 같이 스모그 없는 무독성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캘리포니아주 드라이클리닝 업소에 \$10,000 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 보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입법안 998 에는 또한 이 같은 기술의 도입에 앞장서는 시설에 자금을 지원하는 시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'무독성 드라이클리닝 장려 프로그램'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: <http://www.arb.ca.gov/toxics/dryclean/ab998.htm>. 스모그 없는 무독성 기술의 도입을 고려하는 경우, 주정부 보조금 이외에 지역 대기국의 재정 지원도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대기국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¹이 고지에는 드라이클리닝 업소가 이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일부 취합되어 있으나 ARB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드라이클리닝 사업자는 이중 어느 프로그램이 자신의 업소에 적합한지 스스로 고려해야 합니다.

연방 및 주정부 대출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지원은 저이자 또는 보장 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중소기업의 재정 계획을 돕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연락처입니다.

- 소수민족기업개발국(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)(MBDA)은 미국 상무부(Department of Commerce) 기관입니다. MBDA 는 사업주 또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고자 하는 집단 중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집단을 지원합니다. MBDA 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<http://www.mbda.gov>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- 미국 중소기업청(Small Business Administration)(SBA)은 중소기업에 다양한 용자 옵션을 제공합니다. 중소기업청은 대개 은행과 기타 민간 대출업체가 중소기업 고객에게 대출을 보장하게 하는 형식으로 도움을 줍니다.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<http://www.sba.gov/ca>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- 캘리포니아 ‘중소기업 대출 보장 프로그램’(Small Business Loan Guarantee Program)을 이용하는 사업체는 대출업자에게 대출을 받고 양호한 신용 기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중소기업 대출 보장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<http://www.calbusiness.ca.gov/cedpgybfasblgp.asp>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- 캘리포니아 ‘자본 조달 프로그램’(Capital Access Program)은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여 중소기업이 용자를 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. 이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<http://www.treasurer.ca.gov/cpcf/calcap.asp>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사항 문의 ?

드라이클리닝 ATCM 준수 요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메이 풍(Mei Fong, 전화: 916-324-2570, 이메일: sfong@arb.ca.gov), 소니아 빌라로보스(Sonia Villalobos, 전화: 916-327-5983, 이메일: svillalo@arb.ca.gov), 하피주르 초두리(Hafizur Chowdhury, 전화: 916-322-2275, 이메일: hchowdhu@arb.ca.gov)에게 문의하시거나 드라이클리닝 관련 저희 웹사이트 <http://www.arb.ca.gov/toxics/dryclean/dryclean.htm>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 드라이클리닝 ATCM 집행 관련 사항은 거주지 대기국에 문의하십시오. 이 문서를 다른 형식이나 다른 언어로 보시려면 위의 ARB 직원 중 한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. TTY/TDD/Speech to Speech 사용자는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 (California Relay Service) 에 711 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